15.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

1. 기금개요

설치근거	농어업재해보험법		
설치년도	2005년	운용개시년도	2005년
주 무 부 처	농림축산식품부	기금관리주체	농림축산식품부
관리방식	위탁관리	위탁관리기관	농업정책보험금융원

2. 평가결과 요약표

① 개별사업의 적정성

개별사업	평가결과	근 거
농어업재해 재보험금	개선	농업재해재보험 및 어업재해재보험의 통합·구분 운용 여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부문 활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.

② 재원구조의 적정성

평가결과	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	
부적정	자체수입 비중이 29.11%로 미흡함. 정부내부수입 (특별회계전입금)으로 인한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는 29.19%로 적정함.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537.99%로 부채가 과도한 상태이며, 중기가용자산 규모는 적정 최소규모에 미달하여 과소한 상태임.	

③ 기금존치의 타당성

평가결과	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		
존치	기금의 목적이 유효하고, 중복성・유사성 없음.		

3. 존치평가 총평

- □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근거하여,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재해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거대재해 발생시 정부가 실시하는 국가 재보험 사업에의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치되었다. 기금의 기능은 농어업재해보험(농작물, 양식수산물)의 대상품목(보험계약전체)에 대해 자연재해 발생시 재보험료・재보험금을 수납 및 지급하여 거대재해 대비 농어업재해보험 사업의 안정성을 구축하는 것이다. 기금의 주요사업은 재보험료를 납입 받는 업무, 재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,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및 여유자금의 운용 등이다. 기금의 주무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이며, 부처의 위탁을 받아 농업 정책보험금융원이 기금을 운용한다.
- □ 본 기금은 개별 사업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다. 다만, 본 기금의 제도 관련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도깊은 연구가 요청된다. 정부는 재해보험사업 자와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보험기금을 설치하고 거대재해 발생 시 기금으로 국가재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설치 목적과 사업목적이 일치하며, 본 기금의 재보험사업의 설치 목적은 유효하다. 그러나 기금의 성과 및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농업재해재보험 및 어업재해재보험의 통합・구분 운용 여부 및 통합・구분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정도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.
- □ 본 재해보험사업을 일반 예산사업으로 수행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재원 조달이 가능하고 특정 목적에 한정하여 운용할 수 있는 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. 한편, 본 기금의 공공성, 이해상충의 문제 및 효율성을 조화롭게 제고시킬수 있는 거버넌스 방안에 대한 관련 기관 및 민간 전문가의 연구가 요청된다.
- □ 본 기금의 주요 자체 수입재원은 재보험료 수입으로 자체수입의 89.04%를 차지한다. 경상지출 대비 자체수입 비중은 29.11%로 미흡하다. 외부재원은 전액 정부 내부수입(특별회계전입금)으로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는 29.19%로 적정하다. 본 기금 수입재원 성격이 부담원칙에 부합하고 부과기준 및 근거가 명확하다. 그러나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537.99%로 부채가 과도한 상태이며 자체수입원의 다변화 및 확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과도한 부채를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. 중기가용자산은 -348,017백만 원으로 적정규모 최소기준 317,543 백만 원에 미달하여 아주 과소한 상태이다.

- □ 본 기금 목적이 유효하고, 타 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이 없으며,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등 기금 존치의 타당성이 인정된다.
- □ 본 기금은 향후 기금의 성과, 공공성 및 효율성을 보다 제고시키고 대내외 기관 에서의 비판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도 관련 심도깊은 연구가 요청된다.

4. 세부항목별 평가결과

① 개별사업의 적정성

1. 사업 설치목적의 유효성

- 정부는 재해보험사업자와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보험기금을 설치하고 거대재해 발생시 기금으로 국가재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설치 목적과 사업 목적이 일치하므로 본 기금의 재보험사업의 설치 목적은 유효함.
- 농업재해재보험 및 어업재해재보험의 통합·구분 운용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.
 - 농업재해재보험과 어업재해재보험 운용상 수혜 대상자, 양적 규모 및 질적 특성 측면에서 차이가 작지 않으나 현재 기금은 농업재해재보험과 어업재해 재보험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음.
 - 또한, 본 기금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기금의 최초 설치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서 변화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농업재해재보험 및 어업재해재보험의 통합/구분 운용 여부 및 통합/구분의 구체적인 방법, 정도 및 전략에 대해 관련 기관 및 민간 전문가의 연구를 진행하는 등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.

2. 사업주체의 적합성

- 재해보험사업에 자연재해 발생 시 국가와 재해보험사업자간 일정 손익을 분담하는 재보험금 지급사업은 사고발생 여부 및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존재함. 따라서 본 재해보험사업을 일반 예산사업으로 수행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재원 조달이 가능하고 특정 목적에 한정하여 운용할 수 있는 기금으로관리하는 것이 적절함.
- 재해재보험사업은 본 기금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민간 사업자를 일정부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·검토할 것을 권고함.

- 본 기금은 현재 관련 법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농업 정책보험금융원이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농어업재해재보험의 공공성을 우선 고려하기 때문임.
- 재보험사업비 규모는 각년도 사정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있으나(예: 2020년 계획은 500억원, 2021년 계획은 1,500억원), 기금운영비는 큰 변화가 없음 (2020년 및 2021년 계획은 약 6억원).
- 본 기금을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경우 공공성을 제고시키고 이해상충의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, 농림축산식품부와 수탁기관간 계약 관계에서 해당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경우 민간 사업자도 본기금의 공공성, 형평성 및 이해상충의 문제 등을 견지하면서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.
- 즉, 본 기금의 공공성, 이해상충의 문제 및 효율성을 조화롭게 제고시킬 수 있는 거버넌스 방안에 대해 관련 기관 및 민간 전문가의 연구를 진행하는 등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.
- 예를 들어, 과거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에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여 재보험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바 있음. 정부의 지원 하에 공공부문이 재보험 운용을 주도하되 민간의 효율적인 재보험 관리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·검토할 필요가 있음.

3. 사업의 중복성・유사성

 본 국가재보험 및 재보험금 지급사업은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안정기반 구축과 농어민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사업으로 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여타 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이 없음

2 재원구조의 적정성

1.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

- 본 기금의 주요 자체수입은 재보험료 수입이며, 자체수입과 필수지출의 분류는 적정함.
 - 자체수입 중 재보험료 수입 비중은 89.04%임(과거 5개년 평균).
- ㅇ 경상지출 대비 자체수입 비중은 29.11%로 미흡함.
 - 과거 5개년 및 향후 3년의 누적 자체수입 비중은 29.11%이며, 과거 5개년의 자체수입 비중은 27.87%, 향후 3개년의 자체수입 비중은 30.42%로 나타남.
 - 자체수입원의 다변화 및 확대를 통해 자체수입 비중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.
- 본 기금의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29.19%로 적정함(과거 5년 및 향후 3년 평균).
 - 외부재원은 전액 정부내부수입(특별회계전입금)이며, 자체수입 비중이 낮아 거대 재해 발생 시 특별회계전입금이 필요한 상태임.
- 본 기금 수입재원 성격이 부담원칙에 부합하고 부과기준 및 근거가 명확하며,수입재원의 목적사업과의 연계성도 적절함.
 - 재보험료수입은 재보험위험인수의 대가로 재해보험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충실하며 부과근거가 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에 명확히 제시되며 부과기준은 국가재보험약정서에 따름.
 - 해당 수입재원으로 재보험금지급사업에 사용하고 있어 목적사업과 충실히 연계됨.

2.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

- ㅇ 본 기금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537.99%로 부채가 과다한 상태임.
 - 미지급보험금(유동부채) 174,180백만원이 총부채의 41.79%를 차지하고, 미경과 보험료적립금(비유동부채) 169,019백만원이 총부채의 40.55%를 차지함.
 - 자체수입원의 다변화 및 확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부채가 과다한 상태를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.
- ㅇ 본 기금의 중기가용자산 규모는 -348.017백만원으로 아주 과소한 상태임.
 - 본 기금의 중기가용자산은 -348,017백만 원으로 적정규모 최소기준 317,543 백만원 보다 과소한 상태임.
 - 중기가용자산 적정규모 최소기준은 317,543백만원이고 최대기준은 709,411백 만원임.

③ 기금존치의 타당성

1. 기금목적의 유효성

 본 기금은 농어업재해보험사업에 거대재해 발생시 원활한 재보험금 지급을 통한 재해보험사업의 안정기반 구축 및 농어가 경영안정 제고를 위해 설치되었음.
또한, 과거 재보험사업에서 철수하였던 민영보험사가 기금설치 이후 사업에 재참여 하였으며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및 대상재해·대상품목 확대 등 사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어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이 유효함.

2. 타 기금과의 중복성・유사성

- 본 기금은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안정기반 확보와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서, '자연재해시 보험 사업자와 정부가 일정 손익을 나누어 손해를 재보험금으로 지급'하는 사업기능을 보이는 기금은 본 기금이유일함.
- 본 기금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근거하여 자연재해시 재보험금 지급을 위해 설치되었으며, 여타 기금의 설치 목적과 상이하고 주요 기능 및 역할이 구분 되므로 타 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은 없음.

3.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

- 본 기금은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·생활환경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음.
 - 기금은 최근 지속적인 자연재해로부터 재해보험 계약자인 농어민에게 닥칠 수 있는 재난, 사고 및 손해를 극복하고 안정적 농업경영을 지원하며 재해 보험사업자의 경영안정 등에 기여함.